

오배수관로 고압세정 사업자 선정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 가. 단 지 명: 모전현대아파트
- 나.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청백리로 53
- 다. 단지규모: 7개동, 495세대

2. 사업개요

가. 공사명: 단지 내 오배수관로 고압세정

나. 공사범위

- 1) 34개라인 횡주관 및 가지관 고압세정
- 2) 단지 내 오수·배수 및 맨홀 내부 청소
- 3) 외부관로 준설(250mm배관 772m, 300mm배관 131m) - CCTV 30%이상 촬영
- 4) 관로 내 슬러지·퇴적물 및 이물질 제거
- 5) 세정 전, 중, 후 사진첩 및 파일(USB 등) 제출 - 동별 1개소이상 CCTV촬영
- 6) 잔재물(슬러지 등)은 적법하게 즉시 반출처리.
- 7) 공사물량은 현장 확인 후 직접 산출할 것 - 실측 오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3. 입찰의 종류, 낙찰방법 및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전자입찰(www.k-apt.go.kr)

4. 참가자격

가.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나. 사업실적, 기술능력 및 자본금

- 1)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세정공사 실적 5건 이상 업체
※ 주의 : 실적은 최근5년간(2021.1.1~ 입찰공고일)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 2) 기계설비 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폐기물(준설토)수집 운반업 허가 등록 업체
- 3) 자본금 3억원 이상 업체

5. 제출서류(전체사본): 순서대로 편철

가.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와 선정지침 제31조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중 택1, 각 1부. - 낙찰자는 계약시 세부내역서 제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전자입찰시 입찰서양식 불필요)

나.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각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포함) 각 1부.

바.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범위반사실확인서 또는 현황 화면 출력물(공정거래위원회 링크주소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중 택1

사. 위 "4. 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실적현황 및 각 현장별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아.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자. 작업(공사)계획서(시방서) 1부.

6. 현장설명회: 별도 일정 없음, 개별방문 또는 전화 확인

7. 서류제출 및 개찰

가. 제출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14:00까지

나. 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위 제출서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서류를 등록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15:00, 개찰집행자PC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시 참여자에 통보(유선 또는 문자))

8. 무효입찰자 무효 통보 : 서면, 팩스, 유선, 시스템등록 중 어느하나

9.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2.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것.

다. 입찰참가자는 현장 여건, 작업범위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0.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나.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보증 및 무상 재세정 특약

1) 보증기간 중 세정작업의 미흡, 작업상 과실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동일 구간에서 동일하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배수불량, 역류 또는 막힘 등이 재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재세정 및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 재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작업완료 후 새롭게 유입된 음식물, 기름, 물티슈, 비닐, 섬유류, 고형물 등으로 인한 막힘

나) 관로의 파손, 균열, 침하 등 단순 세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설 자체의 문제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 하여야 하며, 긴급한 역류 또는 배수불량이 발생한 경우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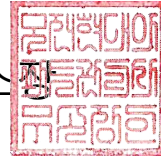
12. 기타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32-039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오수계획 평면도

2026. 10. 1.

모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오수계획 평면도】

맨홀 44개(아파트: 41, 상가: 3(미표시))

